

약제비 계산서·영수증

영수증번호(연월-일련번호)		투약일수		야간(공휴일)조제	
환자 성명	조제일			[] 야간 [] 공휴일	
항목	급여			전액 본인부담	비급여
	일부 본인부담				
	본인부담금	공단부담금			
약품비					
조제기본료					
복약지도료					
조제료					
관리료					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					
65세 이상 등 정액					
합계	(1)	(2)	(3)	(4)	
⑤ 약제비 총액 (①+②+③+④)		납부한 금액	카드		
⑥ 환자부담 총액 (⑤-②)			현금영수증		
			현금		
현금영수증()			* 요양기관 임의활동공간		
신분확인번호					
현금영수증 승인번호					
처방한 요양기관	[] 의원급·보건기관 [] 병원급 [] 종합병원 [] 상급종합병원				
사업자등록번호			상 호		
사업장 소재지					
전화번호			대 표 자	[인]	
		년 월 일			
항목별 설명		일반사항 안내			
1. 일부 본인부담: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은 요양기관의 총비에 따라 30% ~ 50% (의료급여 500원)이나, 환자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*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. 2. 전액 본인부담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별표 6 또는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.		1. 야간(공휴일)조제 등 이 계산서·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8조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(☎1644-2000, 홈페이지: www.hira.or.kr)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 3. 계산서·영수증은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(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)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"현금영수증(지출증빙)"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 (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: http://현금영수증.kr)			

148mm×210mm(백상지 80/㎡)